

안전교육 위탁기관 [☐ 지정취소 ☐ 업무정지] 통지서

기관·단체	기관·단체명
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
	소재지
	전화번호
지정일	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기간
사유	

1.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
[☐]지정취소 [☐]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2.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
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청장 직인